국내외연수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

2021. 6. 15. 제정

주무부서 : 대학원 교육지원팀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'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I 제66조'에 의한 국내외 연수 학점인정의 시행과 학점인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국내연수라 함은 대학원생을 1학기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연구에 종사케 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② 단기해외연수라 함은 대학원생을 1학기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연구에 종사케 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장기해외연수라 함은 대학원생을 1학기 이상 2학기 이하의 기간 동안 대학원장이 사전에 승인한 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연구에 종사케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학과연수위원회) ① 학과연수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는 국내외 연수 실시 및 운영, 학점인정을 위하여 매 학년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

- ② 위원회 구성은 학과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에서는 연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연수자 추천에 관한 사항
 - 2. 연수 프로그램(인원, 장소, 기간 등)에 관한 사항
 - 3. 연수자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
제4조 (연수생 지원 및 선발) ① 국내외 연수 지원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- 1. 지원 당시 본 대학교에서 1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중인 자
- 2. 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수학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(해외연수 지원자에 한함)
- 3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(해외연수 지원자에 한함)
- ② 연수를 신청하고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학과로 제출한다.
 - 1. 연수지원서 1부

- 2. 연수계획서(세부일정 포함) 1부
- 3. 서약서 1부
- 4. 연수기관(대학) 지도교수 또는 담당자 연수 승인 증빙자료 1부
- ③ 학과에서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항(회의록)과 학생에 대한 전항의 서류를 대학원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하고 대학원장이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승인한다.
- 제5조 (변경사항 신청 및 허가) ①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수계획 변경신청서를 학과로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1. 연수기간 종료하기 전에 연수를 중지하려는 경우
 - 2. 연수기관, 연수과제, 연수기관 지도교수 변경 등 프로그램이 변경된 경우
 - 3. 연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해야할 경우
 - 4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
- ② 학과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(회의록)과 학생에 대한 전항의 서류를 대학원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하고 대학원장이 최종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해 결정한다.
- 제6조(학점인정) ① 학점 취득을 위해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·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·연구·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.
- ② 재학 중 국내외 연수를 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수 있다.

그님		수호	문학점	국내외연수 최대 인정학점			
구분	석사	박사	석·박사학위 통합	석사	박사	석·박사학위 통합	
인문사회/예술계열	32	34	64	8	8	16	
자연계열	32	34	63	8	8	15	
공학계열	29	38	62	7	9	15	
의학과/제약산업학과(석사)	33	30	63	8	7	15	
약학과/글로벌혁신신약학과	30	36	63	7	9	15	
음악학과/한국음악학과	33	-	-	8	-	-	
무용학과(실기)	54	54	108	13	13	27	

- ③ 단기 국내연수는 50시간당 1학점으로 인정하며, 150시간 이상 이수시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.
- ④ 단기해외연수는 30시간당 1학점으로 인정하며, 90시간 이상 이수시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.
- ⑤ 장기해외연수는 1학기 기준 15주 이상 연수를 하여야 하며 ② 항의 범위내에서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한다.

- ⑥ 연수를 종료한 후 2주일 이내에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로 제출한다.
 - 1. 결과보고서
- 2. 연수기관(대학) 지도교수 또는 담당자 평가서(자유양식)(단, 연수 기간 및 시간 포함)
 - 3. 왕복 항공권 INVOICE 및 티켓 원본(해외연수자에 한함)
 - 4. 여권사본(사진+입출국일 표시부분)(해외연수자에 한함)
- ⑦ 학과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(회의록)과 학생에 대한 전항의 서류를 대학원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하고 대학원장이 최종적으로 학점인정을 결정한다.
- ⑧ 학점의 이수구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대학원장에 승인을 요청한다. 이수구분의 결정 시 전공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학점 범위내에서 하나의 '00연수' 교과목 또는 개별 교과목으로 나누어 인정할 수 있다. 단, 졸업학점에 포함되고 평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성적을 P(Pass) 또는 F(Fail)로 표기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실시된 연수는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< 서식 1 >

연수지원서

국내 단기연수() / 해외 단기 연수() / 해외 장기 연수()

성명			학번					
학과			과정					
휴대폰			E-mai	il				
학점(총평균평점)	/4.5							
연수희망국			병역(○표	[시])	미필	필]	면제
연수기관								
연수기간		년	월	~	년	월]	
지도교수명			소속/직	위				
연수 과제명	(국문)							
인구 띄세경 	(영문)							
해외연수	기 간		연수국		시험 종	· 류	시호	험 점수
				외국어				
경 험								

※개인정보동의 (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)

- · 수집항목 및 목적: 위 인적사항은 학적처리 및 학점인정을 위해 활용하고자 함
- ▶ 이용기간 : 신청일 ~ 학점인정 종료일.(단,연수기관 관련 학적자료로는 보존 됨)
- · 개인정보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상기 본인은 연수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.

2021

신 청 인 : (인)

지도교수 : (인)

학 과 장 :

< 서식 2 >

연수계획서

성 명		학 번	
소 속	대학원	학과(학부)	과정
연 수 국		연수기관	
연수기간	년 월 일	~ 년	일 일
연수 과제명			

* 아래의 항목별로 각 $1\sim2$ 매씩 총 10 매 내외로 작성

- 1. 연수(연구)의 배경과 목적
- 2. 연수(연구)내용과 방법 및 범위
- 3. 연수기관 선정 이유
- 4. 연수(연구)결과에 대한 기대효과와 활용방안(추후계획)
- 5. 연수(연구)추진일정 :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별첨으로 작성

연수 추진내용(구체적으로, 주차별 작성)	추 진 기 간 (총 시간 포함)	비고

성 명	:	(인)
지도교수	:	(인)
한 과 장	:	(ó)

< 서식 3 >

서 약 서

본인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의 서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위배 시에는 여하한 제재와 조치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생으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연수에 임하겠으며,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2. 본인은 연수기간을 엄수할 것이며 연수기관, 연수과제, 연수기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후 대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겠습니다.
- 3. 연수기간 중 안전에 유의하며, 불법 또는 반도덕적 행위, 도난, 질병, 상해 등과 같은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 중앙대학교에 어떠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.
- 4. 연수 파견기간 중 수학한 학점 이관 신청 및 관련 서류제출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 이 있으며, 연수기관(대학)과 본교 간의 학사일정 또는 학제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사항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5. 본인은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, 대학원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대학원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.
 -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, 국가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
 - 본인의 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연수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

2021

서약인 (연수자) (인)

< 서식 4 >

결 과 보 고 서

성 명				학	번					
소속			대학	원		학교	라		과정	
연수국				연-	수기관					
연수기간		년	월	일	~		년	월	일	
연수시간										
연 구										
	(한글)									
과										
제	(영문)									
명										

<A4 용지 30매 이상 (10point, 160%)>

아래 내용 포함

- 1. 연수 배경과 목적
- 2. 연수 일정(주차별로 연수 시간 기재)
- 3. 연구 상세 내용
- 4. 연수성과 활용 계획

<첨부서류>

- 연수기관(대학) 지도교수 또는 담당자 평가서(자유양식)(단, 기간, 시간 등이 기재되야함)
- 왕복 항공권 INVOICE 및 티켓 원본(해외연수자에 한함)
- 여권사본(사진+입출국일 표시부분)(해외연수자에 한함)

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연수 프로그램에 의한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	2021.	•	
성 명	:		(인)
지도교수	:		(인)
학 과 장	:		(인)

< 서식 5 >

연수계획 변경신청서

성 명		학 번	
소 속	대학원	ō	각과 과정
변 경 항 목	현 행		변 경
변경사유(구체적	<u>먹으로 기술)</u>		

2021. . .

성명:(인)지도교수:(인)학과 장:(인)

학과연수위원회 회의록

대학	대학원	학과(전공)	
1. 일시 및 장소			
E X 0-			
2. 위원	2.0.0 (01)	0.0.0 (01)	
() 0 0 (인)	0 0 0 (인)	
3. 회의내용(아리	개 예시 내용을 포함하 여	후 작성)	
1) 선발 기준(연수생 선발 시)		
2) 연수프로그	램과 전공 적합성		
3) 학점 인정(연수생 선발, 연수생 연	[수기간 종료 후)	
4) 연수생 변분	동사항 승인(발생 시)		
5) 기타 연수/	냉 선발 및 학점인정 등	에 관한 내용	
	,	년 월 일	
		위원장 :	(인)